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9. 4. 5(금) / 총 4매(본문 4)
담당 부서 도시경제과	담당 자	• 과장 배성호, 사무관 이수민, 주무관 문병운 • ☎ (044) 201-4842, 3738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본격 지원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스마트도시법’)」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* (부산 에코델타시티·세종 5-1생활권)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.

* 국가 시범도시 지정('18.1월), 기본구상('18.7월) 및 시행계획('18.12월) 수립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< 국가 시범도시 지원 >>

① 민간기업 참여채널 확대

○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·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*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.

* 스마트도시건설사업(법적 정의):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

- 또한,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·사업시행·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**총괄계획가(Master Planner)** 제도도 법제화했다.
-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(카이스트 정재승 교수), 부산은 IT·플랫폼 전문가(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)를 MP로 위촉·운영 중이다.

②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 확대

-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.
- 다만 동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.

③ 신산업 특례 3종 도입

- △혁신적 토지이용, △공유차량, △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.
- 작년*에 이어 금번 개정안 통과로,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·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의 특례가 신설된다.

*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차·드론·개인정보 등 6종 특례 신설 → '18.8월 입법 완료

< 「스마트도시법」상 신산업 육성 특례(9종) 주요내용 >

구분	신산업 특례 주요내용	관계법령	
'18년 도입	개인정보	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 배제	개인정보보호법 등
	자율차	자율차를 활용한 연구·개발시 운전자 의무(영상장치 활용 금지) 적용 배제	도로교통법
	드론	연구개발, 안전 등 목적의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	군사기지법
	자가망	공공서비스 제공시 자가망 연계 확대 허용(現 교통·안전·방범·방재만 인정)	전기통신사업법
	공공SW	공공이 발주하는 S/W사업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토록 특례 도입	소프트웨어산업법
	토지공급	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	친수구역법 등
'19년 도입	도시계획	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 등 확대	국토계획법
	공유차량	카셰어링 차량의 영업장소 한정 의무 등 완화로 배차·반납장소 자율화	여객운수법
	에너지	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(現 해수만 인정)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	신재생에너지법

《 기존도시 지원 》

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 삭제

-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,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되었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(30만㎡)을 삭제했다.

② 민간제한제도 신설

-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U-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·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* 방식으로, “민간제한제도”를 도입했다.

* 스마트도시건설사업,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,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

- 국토교통부는 동 제도의 일환으로, 올해 1월 ‘스마트시티 챌린지 (스마트도시 민간제한형 사업)’ 공모에 착수*한 바 있다.

※ 공모결과(6곳)는 4.1~4.5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, 5월 중 발표할 예정

③ 정책일반 지원

- 스마트시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 근거*, 비밀누설·뇌물수수 관련 형법상 벌칙** 적용시 총괄계획가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.

* (권한) 시도지사에게 위임, (업무) 전문 기관·단체 등에 위탁

** (비밀누설) 형법 제127조, (뇌물수수) 형법 제129조~제132조

-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“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·기존도심·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- 이번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,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수민 사무관(044-201-48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